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62호 2019. 9. 6(금)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7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4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 (범위내)	비 고
강 사	시 간 당 (1회 1시간)	30,000원	○ 동일 강의 당 지급한도액: 월 600,000원 ※ 동일강의: 강사 및 프로그램 내용이 동일 ※ 1시간 초과 강의 시 시간당의 100% 추가 지급 예) 1시간 30,000원 / 1시간30분 45,000원 2시간 60,000원 / 2시간30분 75,000원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 - 167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대곡천(지방하천)

가. 하천의 명칭 : 대곡천(지방하천)

- 1) 허가 번호 : 제2019 - 10호
- 2) 허가년월일 : 2019. 09. 02.

나.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 2)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

다.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전주 설치

라.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1) 위 치 : 인천 서구 대곡동 100-11 외 4필지
- 2) 면 적 : 0.576m²

마.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09. 02. ~ 2022. 08. 3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14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범위, 기준 명시(안 제5조)
- 서구체육회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 명문화(안 제6조)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신설(안 제8조)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2019. 9.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번호 : 032-560-4134 (FAX 560-2748)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체육단체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9-359호, 2019.8.5.)함에 따라,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구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지도·감독 규정을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범위, 기준 명시(안 제5조)
- 다. 서구체육회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 명문화(안 제6조)
- 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신설(안 제8조)
- 마.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2)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보고·검사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련부서 공문 별도 시행(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국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행사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6. 체육동호인조직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9.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서구체육회를 통하여 서구체육회 회원단체인 구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구체육회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서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 (제4조, 제5조 관련)

호	사 업 명	세부내용	비 고
제4조제1항제2호	생활체육대회·행사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 정서진·아라뱃길 마라톤대회 ○ 구민화합체육대회 ○ 시민생활체육대회 ○ 서구체육회동호인 한마음 대축전 ○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 	
제4조제1항제9호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누체험 교실 운영 	
제5조제1항제2호	서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체육회 운영보조 ○ 서구체육회 차량유지비 지원 ○ 서구체육회 운영물품 구입 지원 ○ 서구체육회 워크숍 	